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